

2021년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Returner) 추가 공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이공계 여성의 R&D 분야 복귀를 지원하고자, 2021년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신규모집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여성과학기술인 및 과학기술분야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1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이사장 안혜연

본 추가 공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침체 극복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조건을 완화하여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을 확대하고자 실시함.

- (지원 가능 인원) 활용책임자 1인당 2명까지 지원
- (경력단절 기간) 무관(사업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참여인력의 학력) 학사학위 이상(단, 학사학위자의 경우 관련분야 6개월 이상 경력 필요)

1. 사업 목적

-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과학기술 R&D 관련 분야 복귀 지원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의 누수 방지 및 활용률 제고

2. 지원 개요

가. 지원 기간 : 최대 3년

※ 12개월 단위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평가

나. 지원규모

- 신규과제 00개 내외 지원
- 신규과제의 경우 활용책임자 1명당 인력 2명까지 매칭 가능
- ※ 2020년에 지원을 받은 활용책임자의 경우 2021년 신규 신청 필요

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구분	학·석사	박사
정부지원금	최대 2,100만원/연 (175만원/월)	최대 2,300만원/연 (191.6만원/월)
기준연봉	2,800만원/연	3,000만원/연

-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지급기준을 따르되,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 지급**

※ 연봉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산출 기준은 기관별 내규에 따라 변동 가능)

- **정부지원금의 5% 이상 교육훈련 등을 위한 연구활동비로 사용 필수**
- 시간선택제 채용 가능(정부지원금은 채용한 인력의 연봉과 비례하여 변동)
 - ※ 시간선택제 채용에 따른 정부지원금 산출 방법은 [참고1] 확인

○ 교육·멘토링 : 참여인력으로 선정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대상으로 **교육(연 1회 필수 참여)** 및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 사업 신청 인력은 반드시 WISET에서 제공하는 예비복귀자 교육을 협약체결 전에 1회 이상 수료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 미수료 시 협약체결 불가

※ 참여기관은 참여인력이 교육훈련,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3. 지원 자격

가. 참여 기관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택1)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의한 연구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 기타 지식재산서비스 및 학술연구용역 등 과학기술분야 관련 업무 수행 기관

나. 참여 인력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 단, 학사 학위 취득자의 경우 경력 6개월 필요

○ 임신, 출산, 육아, 가족구성원 돌봄, 건강,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으로, **사업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계약기간 1년 이하의 인턴, 시간제 인력의 경우 예외(증빙 필수)

○ **(재도전 특별지원)** 기존 참여인력 중 부득이한 사유로 중단한 경우, 최대 3년의 지원기간 중 기존에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하여 신규 지원** (단, 1회에 한함)

※ 계속지원 탈락 또는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잔여기간 **최소 6개월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 재도전 특별지원 내용 예시 >

- (예시 1) 기존에 1년 3개월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B연구원 : 최대 3년 중 1년 3개월을 제외한 1년 7개월 지원에 대하여 지원 신청 가능(잔여기간 6개월 이상)
- (예시 2) 기존에 2년 10개월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C연구원 : 지원불가(잔여기간 6개월 미만)

○ 참여인력은 연구직, 기술직, 연구지원직 등으로 채용되어 연구개발 관련 업무 수행

< 업무 내용 예시 >

- 기초연구, 기술 및 제품 개발, S/W 개발, 산업디자인, 특허 조사·분석, 시장기술조사
- 연구장비·기자재 운용, 설계, 도면의 작성, 가공·조립, 실험·검사·측정
- 전문적 연구지원, 정보 가공·분석, 특허출원
- 시제품 설계 시험·제작, 기술마케팅, 기술영업, 기술협력 등

※ 의·약학, 치의학, 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 가능(단, 수행업무가 R&D 관련 업무이어야 함)

4. 신청 방법

가. 신청 기간 : 11월 1일(월) ~ 11월 30일(화)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2020년에 지원을 받은 활용책임자의 경우 2021년 추가 지원 희망 시 신규 신청 필요

나. 신청 대상 : 기관에서 채용(예정) 인력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다. 신청 방법 : W브릿지 사이트(www.wbridge.or.kr)에서 온라인 접수

※ W브릿지 접속 및 로그인 → 일자리 → 경력복귀지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W브릿지 로그인ID 1개당 신청서 1건 작성 가능

- 1개의 기관에서 여러 명의 활용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활용책임자별로 ID 생성**하여 신청하여야 함(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복수의 ID 생성 가능)

라. 제출 서류

○ 참여 인력

구분	제출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비고
1	사업신청서	- 온라인 시스템(W브릿지)에 직접 입력	필수
2	졸업증명서 사본	- 최종학위에 대해서만 제출	
3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발급 - 개인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고용, 상용 선택 후 조회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신청 → 증명원 출력 - 개별사업장, 선택 사업장 이력내역서 불인정 - 각 차수별 신청 시작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4	정부 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	- 워크넷(www.work.go.kr)에서 발급 - 마이페이지 → 온라인 신청관리 → 정부지원 일자리 → 일자리 참여내역 → 신청기간 포함하여 검색 후 본인 이름이 나온 캡처본 제출(전체화면 캡처) - 사업 신청일 포함하여 검색 후 신청 이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제출	해당 시
5	경력증명서	- 사업신청서에 작성된 이력사항에 대하여 제출	
6	근로계약서	- 사업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턴 또는 시간제 인력의 경우 - 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류 제출	
7	기타	- 본인의 역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참여 기관

구분	제출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비고
1	사업신청서	- 온라인 시스템(W브릿지)에 직접 입력	필수
2	신청공문	- 신청기관장 명의 공문(자유양식, 날인 필수) ※ 대학은 산학협력단장 명의 공문으로 제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4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 확인서, 연구소기업 등록증 등	- 해당 내용 중 택1 ※ 공공연, 대학 제외	
4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2018~2020년 공시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국세청 또는 회계사(세무사) 확인(원본/날인) ※ 공공연, 대학 제외	
5	가점 증빙서류	- 여성기업확인서 사본 - 가족친화인증서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 객관적 증명서류가 없을 경우 불인정	해당 시

※ 계속과제 참여기관은 신청서 작성 후 신청 공문, 사업자등록증 외 기타 증빙서류 제출 면제

마. 신청 시 유의사항

- 기관과 인력 모두 사업 신청을 완료해야 함
- 제출 서류는 온라인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는 비식별처리하여 제출
- 공문에 날인이 없는 서류는 불인정 처리
- 참여인력은 반드시 WISET에서 제공하는 예비복귀자 교육수료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 미수료 시 협약신청 불가
- ※ 교육 일정은 사업 신청 인력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5. 평가 방법 및 기준

가. 평가 방법 : 신청서 및 관련서류에 대하여 요건심사 및 전문가 평가를 실시

- 신청 순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신청 순서가 같을 시 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계속과제 참여기관으로 기타 증빙 서류 제출이 면제된 기관은 전문가 평가 제외(요건심사는 동일하게 진행)

나. 평가 기준

- 요건심사: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기본 자격요건 및 재무건전성 심사
 - ※ 신청자격 부합성,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 등 검토
 - ※ 신청기관이 민간기업인 경우,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한 재무건전성 심사 결과 5점 이하면 선정대상에서 제외
- 전문가평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서면평가 ※ 60점 미만 탈락
 - 참여 기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연구개발 인력 지원의 필요성	- 여성인력 활용현황(여성연구개발인력 비율) - 인력 활용 및 양성 계획의 구체성(업무 및 교육·훈련) 등	30
연구개발 인력 활용 인프라	- 근무여건의 우수성(인건비, 근무시간, 복지제도) 등 - 인력의 고용안정성 확보 계획	40
연구개발 역량	- R&D 수행규모 및 R&D 투자율 - R&D 수행 성과 및 실적의 우수성 등	30
합계		100
가점	기관이 여성기업인 경우	1
	기관이 지방(서울, 경기, 인천 외의 지역)기업인 경우	1
	기관이 가족친화인증기관인 경우	1
	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1
	기관의 R&D 과제분야가 미래산업분야*인 경우	1
	사업 참여인력 고용유지 기관(경력복귀 지원사업으로 채용한 여성 과학기술인을 3년의 사업지원 종료 후에도 고용유지 중인 기관)	1
	최근 3년 이내('17~'19년) 최종성과평가(3년 종료 시)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기관(활용책임자)	2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 예정인 경우	2
감점	최근 3년 이내('17~'19년) 최종성과평가(3년 종료 시)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기관(활용책임자)	-2
	최근 3년 이내('18~'20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중단 경력이 있는 기관(활용책임자)	-3

* 미래산업분야: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 참여인력의 취·창업, 임신·출산·육아, 가족구성원 돌봄, 참여인력 또는 활용책임자 본인의 사고·질환 등

- 참여 인력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신규과제 (일반)	경력단절 극복	- 경력단절 기간 및 사유 - 경력단절 원인의 해결현황 및 극복의지	30
	연구(업무) 수행 역량	- 기존 경력 기간 및 경력의 우수성 - 지원 희망분야와 인력의 업무수행능력의 연관성	30
	경력 유지 계획	- 향후 역량 개발 계획의 구체성 - 지속적 경력개발 계획의 구체성	40
합 계			100
재도전 특별지원	연구(업무) 수행 성과	- 기존 사업참여 기간의 연구(업무)성과 - 기존 사업참여 기간 동안 역량개발 등 노력한 내용	20
	경력재단절 극복	- 기존 사업중단 사유 및 복귀를 위한 노력 현황	30
	경력 유지 계획	- 향후 역량 개발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지속적 경력개발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50
합 계			100

다. 기타 사항

-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 예정
- 예산 소진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 인력의 근무지 기준으로 협약체결 기관 상이

WISET	충청	동남	호남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부산, 울산, 경남, 경북, 대구	광주, 전남, 전북, 제주
WISET	WISET 충남대 사업단	WISET 부경대 사업단	WISET 목포대 사업단

- 협약신청 이후의 협약체결 안내 및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협약변경 등의 행정 절차는 해당 지역의 협약체결 기관에서 진행(사업관리 포함)

5. 유의사항

- 참여 인력은 반드시 WISET에서 제공하는 예비복귀자 교육을 사업 협약체결 (협약서류 제출) 전에 1회 이상 수료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 미수료 시 협약체결 불가

※ 교육 일정은 인력에게 개별 안내

- 채용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4대 보험 및 퇴직금 필수
- 참여기관은 신청 자격을 상시 유지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 지원 기간 동안 연구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동 사업은 과제당 사업비가 소규모이고, 인력양성 및 고용창출을 위한 인건비 지원이 포함된 사업으로 **간접비 계상 불가**
- 사업의 수혜를 받은 참여인력 및 기관은 지원종료 후 2년까지 인력의 경력현황에 대한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조사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함
 - 신청 제외대상 기관 및 인력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이중수혜가 발생할 경우, 기관 및 인력의 신청자격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등
 - 이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평가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활용책임자) 및 인력은 상호 간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기관은 인권경영 이행 및 조치에 협조해야 함.
- 참여기관 및 인력은 평가 방법 및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1회에 한함)
-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되며, 참여 인력은 과제책임자로서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됨(3책5공 적용)

6. 문의처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R&D경력복귀지원팀
 - 02-6411-1011, 1064 / hhkim@wiset.or.kr, jhjang@wiset.or.kr
- 문의전화가 많아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문의 바랍니다.

참고 1

정부지원금 산정 안내

□ 정부지원금 지원 금액 : 학·석사 2,100만원/연, 박사 2,300만원/연

○ 참여 기업은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따르되, 참여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연봉 지급**

※ 기준연봉 : 기관이 본 사업 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최소연봉 (기준연봉 초과 가능)

※ 기준연봉 산정방법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정부지원금의 5%(학·석사 1,050,000원/박사 1,150,000원) 이상 교육훈련비 등을 위한 **연구활동비로 사용**

< 12개월 기준 정부지원금 산정 금액 >

최종학력	기준연봉 (전일제)	정부지원금(12개월)		
		인건비	연구활동비	계
학·석사	2,800만원/연	19,950,000원	1,050,000원	21,000,000원
박사	3,000만원/연	21,850,000원	1,150,000원	23,000,000원

※ 정부지원금 : 기준연봉에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급(1년 기준)

□ 시간선택제로 채용 가능

○ 시간선택제 채용 시 정부지원금은 채용한 인력의 연봉과 비례하여 변동

①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 ≥ 기준연봉 ➡ 정부지원금 전액 지급

※ (예시) 시간선택제 채용자 A(석사)의 연봉이 2,900만원일 경우

→ 석사의 기준연봉이 2,800만원이므로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이 기준연봉보다 높음

→ 정부지원금 2,100만원 전액 지급

②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 < 기준연봉 ➡ 정부지원금 차등 지급

$$[\text{계산식}] \quad \frac{\text{시간선택제 근무 시 연봉}}{\text{전일제 근무 시 연봉}} \times \text{정부지원금 전액}$$

※ 전일제 근무시 연봉은 참여기관의 인사기준 및 경력을 산정하여 기관에서 자체 결정.

※ (예시) 시간선택제 채용자 B(박사)의 연봉이 2,800만원일 경우

(전일제 근무시의 연봉은 3,500만원)

→ 박사의 기준연봉이 3,000만원이므로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이 기준연봉보다 낮음

$$\rightarrow \frac{\text{시간선택제 근무 시 연봉}}{\text{전일제 근무 시 연봉}} \times \text{정부지원금 전액} = \frac{2,800\text{만원}}{3,500\text{만원}} \times 2,300\text{만원} = 1,840\text{만원}$$

(전일제 근무시의 연봉은 참여 기업에서 확인)

참고 2

신청 자격요건

□ (인력) 동등학력 인정요건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자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자
- 산업디자인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산업디자인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또는 단일 등급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자
-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자

□ (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 기관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국공립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참고 3

신청 제한 사항

□ 기관 제한 사항

- 「과학기술기초법」 제 11조 2항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자
- 동 사업은 채용을 전제로 3년 이상 채용이 가능해야 하며, '인턴'으로 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제재조치 등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 다음의 '신청제외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비영리기관 제외)

< 신청제외 기관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인력 제한 사항

-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중복지원 불가)
 - ※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내역 확인 : 워크넷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온라인 신청관리 → 정부지원 일자리 → 일자리 참여내역 → 신청기간 포함하여 검색
 - ※ 교육훈련 참여 및 참여기간이 종료된 건은 중복에 해당하지 않음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학위과정 중인 자 신청불가
- 제재조치 등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 신청기관의 기관장(사업주) 또는 활용책임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 ※ 사업기간 중 친족관계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함

< 친족관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2】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기타

- 임금체불, 노동법 위반 등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기관은 풀에서 제외하며, 당해 연도 재신청 불가

참고 4

사업 연간일정

절차	내용	수행주체
사업 공고	· 신규 참여기관 및 참여인력 모집 공고	WISET
↓		
사업 신청	· 신청서 접수(온라인) · www.wbridge.or.kr	참여기관 및 인력
↓		
선정평가	· 적격성 평가 결과 및 선정	WISET 평가위원회
↓		
필수교육 수강	· 참여인력 예비복귀자 대상 교육 필수 이수	참여인력
↓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 참여 기관에서 해당 지역의 접수처에 신청 · 협약체결 후 사업비 지급	참여기관 WISET/지역사업단
↓		
사업 수행	· 참여기관의 인력활용 및 사업수행 · 참여인력의 연구개발 수행 · 교육훈련 및 멘토링 참여	WISET/지역사업단
↓		
교육·멘토링 지원	· 인력의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제공	참여인력 WISET, 지역사업단
↓		
중간점검 및 현장컨설팅	· 사업수행 중간점검 및 현장컨설팅 실시	WISET/지역사업단
↓		
연차평가	· 계속지원여부 평가	WISET/지역사업단
↓		
최종보고서 접수 및 사업비 정산	· 사후실적보고서에 대한 회계정산 실시	WISET/지역사업단

※ 지원 절차는 각 차수별 진행

※ 상기 절차 및 일정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별도 안내 예정